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754 발의연월일: 2023. 9. 26.

발 의 자:고영인·김상희·윤준병

김승남 • 박주민 • 남인순

최종윤 • 민병덕 • 안호영

인재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취약계층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안전취약계층의 범주에 장애인의 영역은 포함되어있는 반면, 정 신질환자의 영역은 제외되어 있음.

정신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정신재활시설·정신요양시설에 거주하고 있고, 정신질환자의 경우 재난 시판단 능력 저하로 인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화재 재난의 경우, 비정신질환자의 사망자 수는 10만 명당 0.6

명인 것에 비해 정신질환자의 사망자 수는 10만 명당 1.2명으로 정신질환자의 사망률이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안전취약계층의 범주에 정신질환자의 영역도 포함시켜 안전을 관리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제9호의 3).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의3 중 "저소득층"을 "정신질환자, 저소득층"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의2. (생 략)	1. ~ 9의2. (현행과 같음)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	9의3		
이, 노인, 장애인, <u>저소득층</u>	<u>정신질환</u>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u>자, 저소득층</u>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			
한 사람을 말한다.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